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358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  
교육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0월 2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 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재익 기획조정실장)

#### 1. 제안이유

- 2023년 7월 1일자로 한시기구로 설치된 ‘청사이전추진단’의 존속 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이에 따른 조직과 사무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기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청사이전추진단 설치 조항 및 사무내용 삭제(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10호)
- 나.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간 삭제(조례 제8692호 부칙 조항)

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58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된 ‘청사이전추진단’의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직과 사무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사 이전 준비를 위한 ‘청사이전추진단’의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<sup>1)</sup> 한시 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한 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.

---

1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 
부 칙<제8692호, 2023.5.18.>  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
제2조(한시기구) 제2조의2제2항의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- 또한 교육행정국 사무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9조 제10호를 삭제하며,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<제8692호, 2023.5.18.> 제2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신청사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, 신청사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공정률이 98%<sup>2)</sup>에 이르는 등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2025년 12월 20일에 준공 예정이며, 2026년 1월~2월간 가구 및 전화 등을 설치하고 2026년 3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.

### [표-1] 신청사 향후 추진 계획

일정	내용	비고
2025.12.15.	준공감리	
2025.12.20.	준공(사용허가) 예정	
2025.12.22.	통합관계 예비운영, 스마트오피스 조성	3개월
2025.12.27.	1차 입주청소	10일
2025.12.29.	전화 · VDI 설치	
2026.1.5. ~ 1.12.	가구(회의 · 리더 · 기타공간 · 스마트워크센터) 등	
2026.2.2.	특별실(체력단련실 등) 조성 등	
2026.2.9.	2차 입주청소	7일
2026.3.	특별실 조성(비상대피시설 등), 실내 조경	
2026.3.	이사	시의회 회기 이후 10일간
2026.5.	3차 입주청소(어린이집)	7일

자료: 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
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부칙을 통해 2026년 3월 1일로 규정되어 있고, 이는 한시기구의 기한 도래와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게 시행되는것인바, 신청사 이전 준비 기구인 ‘청사이전추진단’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동 개정조례안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2) 서울특시교육청 신청사건립누리집 공정현황(2025.12.1. 기준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0호를 삭제한다.

부칙(조례 제8692호, 2023. 5. 18. 공포) 제2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한시기구의 설치 등) ① (생략)  <u>② 교육행정국에 청사이전추진단을 두며,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u>	제2조의2(한시기구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 제&gt;</u>
제9조(교육행정국)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 1. ~ 9. (생략)  <u>10.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</u>	제9조(교육행정국) ----- -----.  1. ~ 9. 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 제&gt;</u>
부칙 <조례 제8692호> 제1조(시행일) (생략)  <u>제2조(한시기구) 제2조의2제2항의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</u>	부칙 <조례 제8692호> 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 제&gt;</u>